
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8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8

라. 상정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총무위원회(96. 6. 19)상정

마.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총무위원회(96. 6. 20)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업무량이 과중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직급을 상향조정하고,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되는 취득세·등록세 납세의 고지서 발부업무 등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 상향조정(지방행정 6급 → 지방행정 5급)
- 자동차 관련 취득세·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
-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은 무엇인가?	○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온라인 체제가 되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4. 토론포의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7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8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업무량이 과중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직급을 상향조정하고,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되는 취득세·등록세 납세의 고지서 발부업무 등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

주요골자

-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 상향조정(지방행정 6급 → 지방행정 5급)
- 자동차 관련 취득세, 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
-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
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제3조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,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
- 11. 1가구 2차량 중과세 자료발취 통보
- 12.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
- 13.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

제4조제1항중 “지방행정주사료”를 “지방행정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업무)생략		제3조(업무)(현행과 같음)		
1~9(생략)		1~9(현행과 같음)		
<u>신설</u>		<u>10.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발부</u>		
<u>신설</u>		<u>11. 1가구 2차량 중과세 자료발취 통보</u>		
<u>신설</u>		<u>12.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</u>		
<u>신설</u>		<u>13.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</u>		
10. (생략)		14. (현행 제10호와 같음)		
제4조(소장) ①사업소는 소장을 두며, <u>지방행정주사료</u> 보한다.		제4조(소장) ①		<u>지방행정사무관으로</u>
②(생략)		②(현행과 같음)		